

“윤 정부 무분별한 감세 기조 정상화해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 해법’ 세미나
오기형 “감세 경쟁 자체 촉구…상속세 폐지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192명의 의원들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고 서안을 만들어서 돌렸다”며 “경제 성장 속에서도 세수가 줄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식”이라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국민의힘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 틀에서 추진 의지를 보였던 의제다.

오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낸 토론토자료집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이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래도 유지됐으며 이를 상향화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 상속세와 사망 전의 증여 세는 같은 성격이다.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등과 연계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논의도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국민의힘 주장도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김영환 의원도 감세 정책

에 대한 신중론을 표했다.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걸 또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든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세를 반드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조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빠져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감세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소석연구 위원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되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세 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

/뉴스

국힘 대선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안철수·홍준표 탈락…50% 이상 득표자 없어



했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韓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법 헌법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 서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